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10. 9. 2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0년 8월 30일

나. 제 안 자 :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0. 9. 6

○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2010. 9. 15 ~ 9.16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 2010. 9. 16

다. 상정일자 : 제155회 제1차정례회 제1차위원회(2010. 9. 20)

제155회 제1차정례회 제2차위원회(2010. 9. 27)

제155회 제1차정례회 제3차위원회(2010. 9. 28)

제155회 제1차정례회 제4차위원회(2010. 9. 29)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김 정 선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

나. 제출내역

○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비고
합 계	342,599,576	312,234,106	30,365,470	
일 반 회 계	300,883,844	283,819,226	17,064,618	
특 별 회 계	41,715,732	28,414,880	13,300,852	
특 별 회 계	의료보호기금	522,508	416,000	106,508
	주 차 장	36,365,991	23,896,158	12,469,833
	기반시설부담금	15,603	89,143	△73,540
	마포농수산물시장	4,811,630	4,013,579	798,051

다. 주요내용

○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122억 3,410만 6천원 대비 9.73%인

303억 6,547만이 증가된 3,425억 9,957만 6천원으로, 증가되는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170억 6,461만 8천원, 특별회계가 133억 85만 2천원이 되겠음.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838억 1,922만 6천원보다

170억 6,461만 8천원이 증가한 3,008억 8,384만 4천원으로,

舊청사 사용료 5억 3,522만 6천원,

2009회계년도 결산 결과 증가된

순세계잉여금 112억 7,956만 5천원,

국소비 보조금 사용잔액 44억 1,035만 2천원,

기정예산 중 사업취소 또는 변경으로 감편성한 17억 8,464만 8천원,

블랑맨홀정비 복구비 1억원,

국소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10억 3,947만 5천원을 추가재원으로 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분 3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음.

○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7억원, 자활근로사업 2천 7백만원,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 4천 8백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2억 2천 8백만원, 노인일자리사업 2억 8천 5백만원, 서울형 어린이집 급식도우미 지원사업 5천 8백만원, 무단투기계도·단속 청소지킴이 운영 1억 2천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 사회복지·보건 분야에는

생계주거급여 지원 6억, 연남경로당 임차보증금 2억 5천 2백만원, 보훈회관 예정건물 개보수비 9천 1백만원, 장애인 셔틀버스 교체 1억 3천 6백만원, 독감예방접종 민간의원 위탁 6천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1억 3백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 가정복지·교육 분야에는

상암택지개발지구 공원녹지 위탁 관리에 2천 3백만원, 어린이공원 위탁 관리 1천 4백만원, 어린이공원 모래놀이터 정비 7천 3백만원, 흥제천 녹화사업 5억원, 현석나들목 공중화장실 설치 3천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 토목·치수 분야로는

미불용지 보상 8천만원, 계단도로 설치 공사 9천만원, 잔다리길외 2개노선 도로정비 3억 3천만원, 포장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8억원, 불량맨홀 정비 1억원, 제설대책 추진 1억 4천 3백원, 뒷골목 보안등 및 가로등 정비사업 5억 7천만원, 빗물받이 준설 2천만원,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3억원 흥제천·불광천 생태하천 관리 부담금 1억 2천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 문화 분야로는

한강마포나루 문화축제, 마을미술 프로젝트에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 청사관리 분야로는

자동차민원실외 1개소 창문 설치에 1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고,

▷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경비로 상용직 퇴직금 중산정산 3억원을 편성 하였으며, 기타 예비비로 47억 2,837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 재무활동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53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감편성 현황으로는

▷ 마포디자인개발 진흥지구 지정 용역비 2억 981만원,

▷ 희망키움통장 사업비 4,585만원,

▷ 성산종합복지관 증축 사업 3억 5,065만원,

▷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투자사업 2억원,

▷ 희망근로 사업 7억 1,063만원,

▷ 취업정보은행 운영 인건비 1,620만원,

▷ 위기가족상담사업 인건비 1,440만원

▷ 서교로 디자인거리 조성 행사비 2천만원,

▷ 정책숲 가꾸기 사업 3,900만원,

▷ 학교도서관개방운영 2천만원,

▷ 취학잔아동 불소도포사업 1백828천원 등 총 17억 8,468만 8천원을 감액하였음.

○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127페이지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875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7,775만 8천원을 계상하여,
세출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6,058만원을 편성함.

▷ 주차장 특별회계는

139페이지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18억 9,987만 7천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6,995만 6천원,
염리주차장 체육시설 설치 보전금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전거등록 시스템 구축 3천만원을 감액하고,
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8,394만 5천원,
예비비로 122억 1,589만 9천원을 편성함.

▷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징수교부금 수입 7,435만 5천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81만 5천원을 계상하여,
세출에 예비비 7,354만원을 감액한 1,560만 3천원을 편성함

▷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7억 9,805만 1천원을 계상하여,
세출에 예비비 7억 9,805만 1천원을 편성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신 승 관]

< 검 토 결 과 >

가. 세입·세출 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율(%)
합 계	342,599,576	312,234,106	30,365,470	9.73
일 반 회 계	300,883,844	283,819,226	17,064,618	6.01
특 별 회 계	41,715,732	28,414,880	13,300,852	46.81
의료보호기금	522,508	416,000	106,508	25.60
주 차 장	36,365,991	23,896,158	12,469,833	52.18
기반시설부담금	15,603	89,143	△73,540	△82.50
마포농수산물시장	4,811,630	4,013,579	798,051	19.88

나. 세입예산

▣ 총 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율(%)
합 계	342,599,576	312,234,106	30,365,470	9.73
지 방 세	66,459,756	66,459,756	0	0.00
세 외 수 입	117,832,423	88,506,428	29,325,995	33.13
경상적세외수입	32,199,194	32,038,323	160,871	0.50
임시적세외수입	85,633,229	56,468,105	29,165,124	51.65
지 방 교 부 세	4,251,000	4,251,000	0	0.00
조 정 교 부 금	70,331,727	70,331,727	0	0.00
조정교부금	68,664,449	68,664,449	0	0.00
재정보전금	1,667,278	1,667,278	0	0.00
보 조 금	83,724,670	82,685,195	1,039,475	1.26
국고보조금등	42,350,269	41,648,549	701,720	1.68
시도비보조금등	41,374,401	41,036,646	337,755	0.82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율(%)
합 계	300,883,844	283,819,226	17,064,618	6.01
지 방 세	66,459,756	66,459,756	0	0.00
세 외 수 입	78,190,691	62,165,548	16,025,143	25.78
경상적세외수입	21,247,748	21,012,522	235,226	1.12
임시적세외수입	56,942,943	41,153,026	15,789,917	38.37
지 방 교 부 세	4,251,000	4,251,000	0	0.00
조 정 교 부 금	70,331,727	70,331,727	0	0.00
조정교부금	68,664,449	68,664,449	0	0.00
재정보전금	1,667,278	1,667,278	0	0.00
보 조 금	81,650,670	80,611,195	1,039,475	1.29
국고보조금등	42,142,769	41,441,049	701,720	1.69
시도비보조금등	39,507,901	39,170,146	337,755	0.86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율(%)
계	41,715,732	28,414,880	13,300,852	46.81
의료보호기금	522,508	416,000	106,508	25.60
주 차 장	36,365,991	23,896,158	12,469,833	52.18
기반시설부담금	15,603	89,143	△73,540	△82.50
마포농수산물시장	4,811,630	4,013,579	798,051	19.88

다. 세출예산

▣ 성질별 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율(%)
합 계	342,599,576	312,234,106	30,365,470	9.73
인 건 비	81,236,389	81,251,200	△14,811	△0.02
물 건 비	33,025,850	32,858,985	166,865	0.51
경 상 이 전	143,768,332	140,454,237	3,314,095	2.36
자 본 지 출	42,918,950	40,119,458	2,799,492	6.98
용자 및 출자	3,000	3,000	0	0.00
내 부 거 래	1,969,610	1,269,610	700,000	55.14
예비비및기타	39,677,445	16,277,616	23,399,829	143.75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율(%)
합 계	300,883,844	283,819,226	17,064,618	6.01
인 건 비	79,811,304	79,826,115	△14,811	△0.02
물 건 비	31,711,298	31,514,433	196,865	0.62
경 상 이 전	136,039,961	132,725,866	3,314,095	2.50
자 본 지 출	38,527,768	35,728,276	2,799,492	7.84
내 부 거 래	1,969,610	1,269,610	700,000	55.14
예비비및기타	12,823,903	2,754,926	10,068,977	365.49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율(%)
합 계	41,715,732	28,414,880	13,300,852	46.81
인 건 비	1,425,085	1,425,085	0	0
물 건 비	1,314,552	1,344,552	△30,000	△2.23
경 상 이 전	7,728,371	7,728,371	0	0
자 본 지 출	4,391,182	4,391,182	0	0
용자 및 출자	3,000	3,000	0	0
예비비및기타	26,853,542	13,522,690	13,330,852	98.58

▣ 사업별 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합 계	342,599,576	312,234,106	30,365,470	9.73
행정운영경비	92,398,652	92,123,252	275,400	0.30
인력운영비	85,128,324	84,844,524	283,800	0.33
기본경비	7,270,328	7,278,728	△8,400	△0.12
재무활동	18,181,200	11,750,465	6,430,735	54.73
내부거래	12,450,465	11,750,465	700,000	5.96
보전지출	5,730,735	0	5,730,735	100.00
정책사업	224,536,423	205,605,463	18,930,960	9.20
예비비	7,483,301	2,754,926	4,728,375	171.63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합 계	300,883,844	283,819,226	17,064,618	6.01
행정운영경비	90,723,753	90,448,353	275,400	0.30
인력운영비	83,453,425	83,169,625	283,800	0.34
기본경비	7,270,328	7,278,728	△8,400	△0.16
재무활동	10,914,965	4,874,672	6,040,293	123.91
내부거래	5,574,672	4,874,672	700,000	14.40
보전지출	5,340,293	0	5,340,293	100.00
정책사업	191,761,825	185,741,275	6,020,550	3.24
예비비	7,483,301	2,754,926	4,728,375	171.63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합 계	41,715,732	28,414,880	13,300,852	46.81
행정운영경비	1,674,899	1,674,899	0	0.00
인력운영비	1,674,899	1,674,899	0	0.00
기본경비	0	0	0	0.00
재무활동	7,266,235	6,875,793	390,442	5.68
내부거래	6,875,793	6,875,793	0	0.00
보전지출	390,442	0	390,442	100.00
정책사업	32,774,598	19,864,188	12,910,410	64.99

라. 검토결과

1) 예산규모

-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12차에 걸쳐 간주처리된 8,063,779천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312,234,106천원 대비 약 9.73%에 해당하는 30,365,470원이 증가한 342,599,576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6.01% 증가한 300,883,844천원,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46.81% 증가한 41,715,732천원.

2)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00,883,84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064,618천원이 증가(6.01%)
-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율(%)
합 계	300,883,844	283,819,226	17,064,618	6.01
지 방 세	66,459,756	66,459,756	0	0.00
세 외 수 입	78,190,691	62,165,548	16,025,143	25.78
지 방 교 부 세	4,251,000	4,251,000	0	0.00
조정교부금 등	70,331,727	70,331,727	0	0.00
보 조 금	81,650,670	80,611,195	1,039,475	1.29

- 주요 증액 사유

- 임시적세외수입 중 지난해도에 지출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 44,892,144천원중 본예산과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33,612,579천원을 차감한 11,279,565천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204,736천원,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205,616천원, 舊 구청사 사용료 535,226천원, 불량맨홀 정비 복구비 100,000천원, 국고 보조금 등 701,720천원, 시비보조금 337,755천원이 증액되고,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3억원 감소함에 따라 총 17,064,618천원이 증가 되었음.

- 제2회 추경 가용재원

본 추경예산안의 세입재원은 17,064,618천원이 되겠으나, 일반회계에서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마포디자인 개발 진흥지구 지정 용역비 등 18건 474,635천원이 세출예산에서 감액 편성되어, 본 추경예산안의 실제 가용재원은 17,539,253천원이 되겠음.

나) 세출예산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0,883,84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약 6.01%에 해당하는 17,064,618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음.
- 편성된 경비를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 인건비는 79,811,30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약 0.02%에 해당하는 14,811천원이 감소 되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의 희망근로사업 축소로 국·시비 보조금 감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물건비는 31,711,29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약 0.62%에 해당하는 196,865천원 증가
 - 경상이전은 136,039,96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약 2.50%에 해당하는 3,314,095천원 증가
 - 자본지출은 38,527,76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약 7.84%에 해당하는 2,799,492천원 증가
 - 내부거래는 1,969,610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약 55.14%에 해당하는 700,000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전출금 500,000천원과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00,000천원임
 - 예비비 및 기타는 12,823,90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약 365.49%에 해당하는 10,068,977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340,602천원, 예산편성후 남은 잔액 4,728,375천원임

○ 조직별로 분류해 보면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율(%)
합 계	300,883,844	283,819,226	17,064,618	6.01
의회사무국	3,033,412	3,033,412	0	0.00
감사담당관	183,684	183,684	0	0.00
행정관리국	101,778,069	101,129,511	648,558	0.64
기획재정국	16,070,278	9,879,452	6,190,826	62.66
주민생활국	139,067,779	134,315,103	4,752,676	3.54
도시관리국	10,639,068	9,212,540	1,426,528	15.48
건설교통국	22,178,537	18,766,939	3,411,598	18.18
보 건 소	7,933,017	7,298,585	634,432	8.69

2) 특별회계

가) 총괄

-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1,715,73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300,852천원 증가(46.81%)
 - 순세계 잉여금 12,727,493천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347,714천원, 영리공영주차장 체육시설 설치 보전금 300,000천원이 증가되었고,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서 기반시설부담금 시세입 징수교부금이 74,355천원이 감소되었음.
-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1,715,73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300,852천원이 증가(46.81%)
- 편성된 경비를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 인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용자및출자는 증감사항이 없으며,
 - 물건비는 1,314,55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약 2.23%에 해당하는 30,000천원이 감소되었는바, 이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자전거등특 시스템 구축 사업이 경찰청에서 기 시행되었으므로 사업을 취소함에 따른 것임.
 - 예비비 및 기타는 26,853,54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약 98.58%가 증가한 13,330,852천원이 증가되었는바, 이는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기타회계전출금 등에 기인하였으나 추경에 사업을 시작하면 이월될 가능성이 많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

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522,50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약 25.60%에 해당하는 106,508천원이 증가되었는바, 이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전액 반환금으로 편성되었음.

다) 주차장특별회계

-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 36,365,99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2.18%에 해당하는 12,469,833천원이 증가되었는바, 증가사유는 순세계잉여금 11,899,877천원,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269,956천원, 기타회계전입금 300,000천원이 증가되었음.
-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 교통행정과에서 그린파킹사업 시비 보조금 반환금 264,957천원, 예비비 12,215,899천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자전거등록 시스템구축사업 30,000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 교통지도과에서 학교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시비 보조금 18,977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음.

라)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5,60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약 82.50%에 해당하는 73,540천원이 감소되었는바, 이는 예비비에서 감액 편성되었음.

리)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 2009회계연도에 처음 설치된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4,811,630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약 19.88%에 해당하는 798,051천원이 증가 되었는바, 이는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세출예산에서는 전액 예비비로 편성되었음.

3) 검토의견

-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등 세입부분의 변경 사항이 발생해 편성하는 예산안으로 구 예산의 건전 운영을 위해 사업 중심의 예산편성을 원칙으로 하면서 행정 운영경비 등은 최소한으로 편성하는 등 구민복리와 직결되는 부분과 기간시설의 보수 및 확충사업에 예산이 우선 투입되도록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는 판단되나,
-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과 달리 예산편성이후 신규 투자수요의 발생,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및 효과성을 고려하는 한편, 시급한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 또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복지비의 지출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할 수 있지만, 신규 복지사업이나 보건사업의 경우 한번 사업비가 투입되기 시작하면 중도에 사업을 중단하기 힘들고, 지속적으로 마포구의 재정예 부담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바, 이를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지출증가를 억제하고 지원의 기준이나 타당성, 수혜집단에 대한 면밀한 분석 그리고 철저한 사후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고,
- 자치행정과의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영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임금 3,855천원이 추가로 편성된 바, 이는 기간제 근로자 2명의 퇴직금이 편성된 것으로서 동 퇴직금을 재산정한바 5,623천원으로 편성 요구된 예산으로는 퇴직금이 부족하므로 수정이 요망되며,
- 사회복지과의 장벽없는 환경만들기 사업에 편성된 소방설비 설치비 지원 민간위탁금 9,064천원은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소방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것이므로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사업으로 과목을 이동 편성하여야 하고
- 공원녹지과 공원시설 유지관리사업 중 어린이공원 모래놀이터 정비사업 예산 73,267천원은 연남동 은행나무 공원 등 3개소 어린이공원의 모래 놀이터

정비사업으로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정비하려는 것으로 동 사업은 상상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서 연남동 느티나무어린이공원이 2010. 4. 5일, 은행나무어린이공원이 2010. 4. 8일, 도화동 삼개어린이공원이 2010. 5. 4일 각각 준공된 시설인바, 당초 상상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시, 실질적으로 공원 시설을 이용할 인근 주민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해 준공 된지 불과 4~5개월 만에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여 재공사를 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이는 미흡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인한 예산 낭비 사례로 판단되는바,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를 시행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의 민간위탁 기준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이외의 부담경비” 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2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 제38조제2항 및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법령에서 위임된 편성운영 기준이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고 총사업비가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1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근거가 있어야 하나, 토목과의 도로제설유지사업에 편성된 제설민간위탁용역비 100,000천원은 2010년도 본예산에도 100,000천원이 편성되어 있어 총 사업비가 200,000천원으로, 동 사업이 금년 연초 1,2월에 잦은 폭설로 인해 본예산에 편성된 민간위탁 용역비 100,000원이 전액

지출되어 하반기 제설작업에 지장이 초래되고 기상이변에 의한 폭설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조례 제정 등 제반 법규를 정비하여 정당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에는 동 사업이 민간위탁을 하여야 할 사업인지 시설비로 시행하여야 할 사업인지 여부를 예산관리부서 등 유관부서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 및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와 검토보고서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람.

4. 심사결과

가.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나. 계수조정 소위원회 심사경과

1)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 일 자 : 2010. 9. 28(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위원장 : 김순금
- 위 원 : 김수진, 강성국, 미동환, 오진아, 윤동현, 장영숙, 차재홍,

2) 계수조정소위원회 예산안 심사

- 계수조정 소위원회 제1차 회의
 - 일 시 : 2010. 9. 28. 15:00~ 16:30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계수조정위원회 위원 8명
 - 내 용 : 사업별 계수조정 심의

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제출

- 일 시 : 2010. 9. 29.
- 제 안 자 : 마포구청장
- 수정내용 : 별 첨
-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

- ◇ 붙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현황 1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동의 및 수정예산안 1부. 끝.